

우리나라 제품안전관리제도와 체계 1

백종섭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품안전관리의 법률적 체계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리제도와 체계는 법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은 2010년 2월 4일에 제정되고 2011년 2월 5일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라고 규정

[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는 국내외 환경변화와 안전 사고 급증, 제품안전 대응체계의 미비와 대응책 강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과 <제품안전> 7월호를 참조할 수 있다.

제품안전과 관련한 개별법은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제품안전관리의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에 대하여 [기본법]에서는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법령에 규정된 제품의 적용범위는 적용대상에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품별 제품안전인증제도

정부는 공산품 또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등의 우려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통합인증표시, 안전인증표시, 자율안전확인표시,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안전·품질표시 등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먼저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 본 주제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용역보고서를 <제품안전> 월간지 편집형식에 따라 3(4)회에 걸쳐 연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제도와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도는 강제인증제도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안전확인제도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해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두번째로 생활용품(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법률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 법률은 “공산품안전관리”에 대하여 공산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여 제품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안전·품질표시제도 및 어린이보호포장제도가 있다. 안전인증대상품목은 5개 분야에 14개의 공산품(가속눈썹,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비비탄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인증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율안전확인제도는 [품공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5개 분야 47품목(등산용 로프, 건전지, 방사기, 미끄럼방지타일,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등)이다.

안전·품질표시제도는 [품공법]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전에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로 4개 분야에 30개 품목(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물탱크, 가구, 우산 및 양산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보호포장제도는 [품공법]에 따라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으로 현재 대상제품은 화학분야 7개 제품(광택제, 방향제, 부동액, 세정제, 얼룩제거제,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제, 접착제)이 해당된다.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마지막으로 항공기 부품은 「항공기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하며, 품질검사제도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또는 특정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품질보증체제검사와 생산검사로 구분되며, 검사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검사기관이다.

이상의 주요 제품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항공기 부품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원이다. 다음호에는 기술표준원의 구조와 기능 및 개선방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